

대전고등법원(청주) 2022. 10. 27 선고 2021나51366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전고등법원(청주) 2022. 10. 27 선고 2021나51366 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 7. 22 선고 2020가합565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1.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성유

2. B

변론 종결 2022. 9. 15.

판결 선고 2022. 10. 27.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 7. 22. 선고 2020가합5655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A와 C 사이에 2019. 11. 18.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018,165,739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A은 원고에게 692,171,8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B와 C 사이에 2019. 11. 18.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018,165,739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B는 원고에게 325,993,89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A과 C 사이에 2019. 11. 18.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 A은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와 C 사이에 2019. 11. 18.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 B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무자 C에 대한 조세채권

1) C은 1992. 2. 29.부터 2019. 8. 20.까지 'D'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다. 원고는 그 기간 동안 C의 해외용역 매출 누락을 확인하여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삼성세무서)와 종합소득세(역삼세무서)를 각 부과하였으나, C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아래 표의 순번 1번 내지 11번 항목).

2) 한편, C은 2017년경 서울 강남구 E아파트 F호를 양도하여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아래 표의 순번 12번 내지 14번 항목).

3) C이 위와 같이 미납한 조세(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의 2019. 11. 18. 기준 체납액과 2021. 12. 14. 기준 체납액은 아래 표의 해당 란 기재와 같다.

1	부가가치세	2003년 2기	2011. 7. 31.	7,614,500	7,614,500
2	2004년 2기	2011. 7. 31.	10,475,750	10,475,750	
3	2002년 2기	2011. 7. 31.	573,530	573,530	
4	2004년 2기	2013. 3. 31.	81,950	81,950	
5	2007년 1기	2013. 3. 31.	843,230	843,230	
6	2006년 1기	2013. 3. 31.	3,758,840	3,758,840	
7	2005년 1기	2013. 3. 31.	4,137,520	4,137,520	
8	2009년 1기	2013. 3. 31.	5,875,670	5,875,670	
9	2005년 2기	2013. 3. 31.	899,840	899,840	
10	종합소득세	2007년	2011. 7. 31.	620,260,430	620,260,430
11	2010년	2011. 10. 31.	307,223,140	307,223,140	
12	양도소득세	2017년	2017. 12. 31.	24,424,840	26,966,980
13	2017년	2018. 5. 31.	131,248,760	145,572,440	
14	2017년	2019. 8. 31.	127,773,120	143,490,000	
합계	1,245,191,120	1,277,773,820			

나. C과 피고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

1) C과 피고들의 어머니인 G은 2019. 5. 4. 상속재산으로 별지 제1 목록 및 제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따로 특정이 필요할 경우 별지 목록 기재

번호로 표시한다)을 남기고 사망하였다(이하 위 G을 '망인'이라 한다).

2) 망인의 상속인인 C과 피고들은 2019. 11. 18.에 이르러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A이,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B가 이를 각 단독 상속한다'는 취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3) 피고들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에 따라 2019. 11. 27. 별지 제1 목록의 제1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A 명의로,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B 명의로 각 '2019년 5월 4.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당시 미등기였던 별지 제1 목록 제10, 1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A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내역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일인 2019. 5. 4. 당시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일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내역은 아래 표 해당 란 기재와 같다1) .

충주시 H 토지(별지 제2 목록 제1항)	피고 B	106,032,000	없음
충주시 I 토지(별지 제2 목록 제2항)	위와 같음	49,468,000	없음
충주시 J 토지(별지 제2 목록 제3항)	위와 같음	706,464,000	없음
충주시 K 토지(별지 제2 목록 제4항)	위와 같음	296,946,000	① 2015. 8. 20. 설정된 AE조합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7억 원(채무자: 망인)② 2017. 7. 26. 설정된 AE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억 5,000만 원(채무자: 피고 A)
충주시 L 토지(별지 제2 목록 제5항)	위와 같음	633,080,000	
충주시 M 토지(별지 제2 목록 제6항)	위와 같음	259,168,000	
충주시 N 토지(별지 제1 목록 제1항)	피고 A	85,492,000	① 2015. 8. 20. 설정된 AE조합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7억 원(채무자: 망인)② 2017. 7. 26. 설정된 AE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억 5,000만 원(채무자: 피고 A)
충주시 O 토지(별지 제1 목록 제2항)	위와 같음	261,800,000	
충주시 P 토지(별지 제1	위와 같음	203,278,000	

충주시 H 토지(별지 제2 목록 제1항)	피고 B	106,032,000	없음
목록 제3항)			
충주시 Q 토지(별지 제1 목록 제4항)	위와 같음	206,896,000	
충주시 R 토지(별지 제1 목록 제5항)	위와 같음	282,900,000	
충주시 S 토지(별지 제1 목록 제6항)	위와 같음	1,479,184,000	
충주시 T 토지(별지 제1 목록 제7항)	위와 같음	109,788,000	2013. 11. 13. 설정된 AE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0원(채무자: 망인)
충주시 U 토지(별지 제1 목록 제8항)	위와 같음	142,128,000	
충주시 U, N 지상 건물(별지 제1 목록 제9항)	위와 같음	29,872,440	
충주시 H 지상 V동호(별지 제1 목록 제10항)	위와 같음	12,000,780	없음
충주시 H 지상 W동호(별지 제1 목록 제11항)	위와 같음		없음
합계	4,864,497,220	1,050,000,000원	

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의 채무초과 상태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전항 기재 각 부동산의 각 1/3 지분과 합계 1,874,678원

예금채권의 1/3 상당액을 적극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나, 전항 기재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의 1/3 상당액과 이 사건 조세채권을 포함한 조세채무들로 인하여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 11, 13 내지 15호증, 을 제3, 48 내지 5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AF에 대한 시가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C의 채무초과 상태

원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부터 C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그리고 C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고(민법 제1008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상속인 및 법정상속분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는 자녀인 C와 피고들 등 3명이 있고, 각각의 법정상속분은 1/3이다.

나) 망인의 상속재산

상속개시 당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망인의 상속재산으로는 제1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합계 4,864,497,220원 상당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있었다. 사해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2019. 11. 18. 이루어졌으므로 위 날짜를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은 그로부터 약 6개월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의 가액과 거의 차이가 없을 것으로 추인되므로, 제1의 다.항에서 본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C의 구체적 상속분의 존재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다) 피고들의 기여분 인정 여부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A은 2015. 5.경부터 고령의 망인과 동거하며 망인의 가사를 전담하다가 2016년 여름경 치매가 발병한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망인을 간호하기도 하는 등으로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망인을 대신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일부 토지 위에 있는 사과나무 과수원을 운영하면서 적자상태였던 영업수지를 크게 개선하였으므로, 피고 A은 망인의 부양과 재산 유지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또한 피고 B는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20여 년 동안 망인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망인을 부양하였다. C은 2019. 1. 말경 이미 망인으로부터 상속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 중 합계 6억 원을 받은 상황 아래에서 피고 A이 위와 같은 기여를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들에게 '공시지가 기준 약 21억 원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의 몫(1/3)인 7억 원에서 6억 원은 피고 A이 위 6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1억 원은 피고 A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C이 1억 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 A에게 이전한다'는 취지로 협의하였고, 이러한 협의 내용을 기초로 망인 사망 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들의 기여분[이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피고 A은 본인의 재산적 기여분이 이 사건 각 부동산 가액의 30% 상당액으로, 본인의 부양적

기여분이 이 사건 각 부동산 가액의 20% 상당액으로 인정되어야 하고(2022. 5. 18.자 답변서 참조), 피고 B는 본인의 부양적 기여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2022. 9. 13.자 준비서면 참조)]을 고려하여 C의 구체적 상속분이 산정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인바,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11. 25. 자 2012스156, 157 결정 등 참조). 또한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그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고가 된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하면서 사해행위의 성립을 다툴 수 없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55631 판결 참조).

(나) 피고 A의 재산적 기여분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위 관련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피고 A의 재산적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인 C과 피고들 사이에서 피고 A이 망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A에게 기여분을 인정하는 취지의 협의가 이루어졌거나가정법원이 피고 A의 기여분을 인정하는 내용의 심판을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A의 재산적 기여분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들의 부양적 기여분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5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은 2022. 9. 9. '본인은 망인으로부터 2회에 걸쳐 총 6억 원을 대출받고 2019. 1.까지 매월 이자를 납부하였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자를 납부할 수 없어 피고 A에게 상속지분 포기를 약속하고 위 6억 원 채무의 인수와 이자 대납을 요청하였다. 망인이 연로하여 3형제가 분담하여 부양하여야 하나 형님들인 피고들의 부양에 기여하지 못했고 특히 피고 A이 중증 치매를 앓았던 망인을 부양하였던 것과 관련하여 본인은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을 제56호증)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1, 12, 13, 20, 21, 28, 5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C이 제출한 위 확인서는 당심에서 이 소송이 진행중이던 2022. 9. 9.에서야 작성된 것이고, 위 확인서 외에는 피고들과 C 사이에 피고들의 망인 부양을 근거로 피고들의 기여분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다거나 그러한 기여분 협의를 기초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할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② 또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서에는 피고들의 망인 부양을 이유로 한 기여분 인정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고, C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을 포기하는 대신 C이 미리 받았다고 하는 합계 6억 원의 변제 의무를 피고 A이 인수하는 내용도 전혀 없는 등 피고들이 주장하는 기여분 인정 경위에 부합하는 내용들도 전혀 없는 점, ③ 또한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C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대신 피고 A이 C의 6억 원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것이지만, 피고 B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을 통해 취득한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이 위 분할협약 이후에도 여전히 위 6억 원 채무와 관련된 AE조합의 근저당권 목적물로 제공되어 있으므로, 피고 A이 C의 채무를 인수한 것인지도 의심스러운 점, ④ 피고들은 제1심에서는 피고들과 C 사이에 피고들의 기여분에 관한 협약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항소이유서에서는 'C이 받은 특별수익 4억 원 및 피고 A의 재산적 기여와 부양적 기여, 피고 B의 부양적 기여를 반영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을 하였다'는 취지로만 주장하다가, 2022. 1. 18.자 답변서에서 처음으로 'C이 2019. 1. 말 구정에 과수원 공시지가가 21억 원 정도 되니 자신의 법정지분이 7억 원 정도인데 그 중 6억 원은 이미 가져간 대출금으로 상계하고 나머지 1억 원은 피고 A이 앞으로 6억 원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고, 또 피고 A이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으니 그 몫으로 대체해 자신의 상속지분을 피고 A에게 귀속시키면 된다'고 제안하여 피고들이 이를 승낙하였다고 주장(제46쪽)하였는바, 이처럼 피고들은 피고들과 C 사이에 2019. 1. 말경 피고들의 기여분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 그 협의 내용은 어떠한지에 관하여 일관된 주장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들 사이에 실제로 기여분에 관한 협의가 있었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 ⑤ 더구나 피고들은 2022. 1. 18.자 답변서에서는 '피고 A의 재산적 기여분을 이 사건 각 부동산 가액의 20%로 산정해 주고 부양적 기여분을 법원이 정해 달라'고 주장하다가, 2022. 4. 1.자 답변서에서는 '피고 A의 부양적 기여분을 3,080만 원으로, 피고 B의 부양적 기여분을 2,070만 원으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며, 2022. 4. 13.자 답변서에서는 '피고 A의 재산적 기여분을 이 사건 각 부동산 가액의 20% 상당액으로, 부양적 기여분을 이 사건 각 부동산 가액의 10% 상당액으로 인정하여 주고, 피고 B의 기여분 주장을 철회한다'고 주장하였고, 2022. 5. 18.자 답변서에서는 '피고 A의 재산적 기여분을 이 사건 각 부동산 가액의 30% 상당액으로, 부양적 기여분을 이 사건 각 부동산 가액의 20% 상당액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등 기여분에 관한 주장을 여러 차례 변경하였는바, 피고들과 C 사이에서 실제로 피고들의 망인 부양을 이유로 기여분을 인정하는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위와 같이 기여분에 관한 주장을 수시로 변경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모습인 점, ⑥ 망인은 AG일자 출생하여 2019. 5. 4. 사망하였는데, 피고 A은 서울에서 가족과 살다가 2016. 2.경 망인의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그 무렵부터 2017. 6.경 대학교수 직을 퇴직할 때까지는 1주일에 며칠씩 망인의 거주지에 머물렀고 퇴직 후부터 2019. 5. 4.까지는 망인과 동거하였는데, 망인이 2016. 8.경 초기 치매 진단을 받고 2017년 여름경 치매 증세가 심해지자 주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내주는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 망인을 돌보고 야간에는 홀로 망인을 돌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 A이 망인과 동거하면서 망인을 부양한 기간은 길게 보아도 3년 남짓으로 이는 망인 전체 생존기간 중 극히 일부 기간에 불과하므로, 피고 A이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망인을 특별히 부양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따라서 피고들과 C이 실제로 피고 A의 망인 부양을 이유로 기여분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협의하였다면, 그 기여분 협의도 C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것이 되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것이다), ⑦ 피고 B의

경우 망인 부양에 관한 주장 내용(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는 부양적 기여분을 2,070만 원으로 주장하다가 이후 부양적 기여분에 관한 주장을 철회하기도 하였다)이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가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망인을 특별히 부양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⑧ 제1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속개시일인 2019. 5. 4. 기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토지들의 가액은 합계 4,822,624,000원이었고, 토지의 시가가 공시지가보다 더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사회일반의 경험칙으로 볼 수 있는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C이 공시지가인 약 21억 원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라는 인식 하에 피고들의 기여분을 인정하고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C로서는 약 30억 원을 초과하는 체납세금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이 작성한 확인서(을 제56호증)를 비롯하여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과 C이 2019. 1. 말경이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피고들의 망인 부양을 이유로 기여분을 인정하는 협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피고들의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에서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기여분이 있음을 전제로 이를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없다. 피고들의 기여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고들과 C의 특별수익 인정 여부 및 그 가액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망인이 2012. 3. 21. 피고 A 명의 계좌에 송금한 1,700만 원과 2008. 5.경과 2012. 3.경 피고 A의 처인 AH은 명의 계좌에 송금한 합계 1억 5,700만 원은 망인의 피고 A에 대한 증여로 추정되므로, 이는 피고 A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피고들은 망인이 2015. 8. 26. C의 처인 AI 명의 계좌에 송금한 4억 원 중 반환되지 아니한 3억 8,000만 원과 2017. 7. 27. 피고 A의 계좌에서 C의 계좌로 송금된 2억 원은 망인이 C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이는 C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등 참조). 한편 상속분의 산정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참작하게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만 발생하고,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증여 또는 유증의 경위, 증여나 유증된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7. 8. 28. 자 2006스3, 4 결정 등 참조).

(나) C의 특별수익 인정 여부 및 그 가액

① 먼저, 2015. 8. 26. 송금받은 돈 중 3억 8,000만 원이 특별수익인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4, 15, 27, 30, 31, 32, 36, 43, 4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망인은 2015. 8. 20.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별지 제1 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 제2 목록 제4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을 담보로 AE조합으로부터 7억 원을 대출받은 뒤, 같은 달 26일 C의 처인 AI 명의 계좌에 4억 원을 송금한 점, C은 2011년경 AJ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아 체납한 세금 10억 원을 납부한

적이 있었는데, 위 대출금 10억 원의 이자 납부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위와 같이 망인으로부터 송금받은 4억 원과 처가로부터 차용한 3억 원으로 합계 7억 원을 마련하여 AJ은행에 대한 위 10억 원의 대출금의 일부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한 점, C은 2015. 10.부터 본인이나 처 AI 명의로 망인 명의의 대출금 통장 계좌에 위 4억 원에 대한 매월 이자로 120만 원이나 140만 원을 송금한 점, C은 망인에게 2016. 7. 21.경 1,000만 원, 2016. 11. 20.경 1,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까지 나머지 3억 8,0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2015. 8. 26. C의 처인 AI 명의 계좌로 C에게 4억 원을 대여한 뒤 사망 당시까지 2,000만 원만을 변제받음으로써, 잔액인 3억 8,000만 원을 C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망인의 생전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면 위 3억 8,000만 원은 장차 상속인으로 될 C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C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한다.

② 다음으로 2017. 7. 27. 송금받은 2억 원이 특별수익인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4, 5호증, 을 제17, 35, 5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E조합은 2017. 7. 27. 망인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별지 제1 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 제2 목록 제4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을 담보로 채무자를 피고 A으로 하여 3억 5,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한 다음 피고 A 명의 계좌로 3억 5,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같은 날 위 계좌에서 위 돈 중 2억 원이 C 명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 C은 망인이나 피고 A에게 위 2억 원을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 C은 이 법원에 '2015. 8.경과 2017. 7.경 망인으로부터 6억 원을 대출받고 2019. 1.까지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을 제56호증)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3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AE조합에 대한 위 3억 5,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자인 피고 A이고, 망인은 그 소유 부동산을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을 뿐인 점, C은 '망인으로부터 받을 유산으로 상환하기로 하고 피고 A에게 2억 원의 대여를 요청하였다'고 확인하기도 하였던 점(을 제36호증)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망인이 2017. 7. 27. C에게 합계 2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여 위 2억 원이 C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 A의 특별수익 인정 여부

갑 제25호증, 을 제24,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피고 A의 처인 AH은 명의 계좌에 2008. 5. 14.경 1억 원, 2008. 5. 28. 경 4,000만 원, 2012. 3. 20.경 1,700만 원을 각 송금하고, 2012. 3. 21.경 피고 A 명의 계좌에 1,7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5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 A은 2010. 6. 9. 망인 명의 계좌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2. 2.까지 합계 1억 원을 송금하였는바, 위 1억 원은 그 송금시기나 송금액에 비추어 피고 A의 주장과 같이 2008. 5. 14. 피고 A이 송금받은 1억 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망인에게 송금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망인이 2008. 5. 28.경 며느리인 AH은 명의 계좌에 4,000만 원을 송금한 경위나 위 돈의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하였고, 망인이 2012. 3. 20.경 AH은 명의 계좌에 1,700만 원을 송금한 경위나 위 돈의 출처도 밝혀지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송금은 망인이 사망한 때부터 약 11년 전 또는 약 7년 전에 이루어진 것인 점, 망인이 피고 A에게 1,700만 원을 송금한 시기는 2012. 3. 21.로서, 망인이 사망한 때부터 약 7년 전이고, 그 액수도 망인의 자산, 수입 등에 비하여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4회에 걸친 위 각 송금행위가 망인의 피고 A에 대한 생전 증여로서 장차 상속인이 될 피고 A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을 미리 주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C의 구체적 상속분

(1) 관련 법리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으므로(민법 제1008조),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급하여 산출된 상속분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특별수익자인 채무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그 재산분할결과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였는지 평가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상속한 금전채무를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 포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633 판결 등 참조).

(2) 판단

○ 간주상속재산: 5,244,497,220원(= 망인의 상속재산 4,864,497,220원 + C의 특별수익 380,000,000원)

○ C의 법정상속분 금액: 1,748,165,740원(= 위 간주상속재산 5,244,497,220원 × 법정상속분 1/3)

○ C의 구체적 상속분 금액: 1,368,165,740원(= 위 법정상속분 금액 1,748,165,740원 - 위 특별수익 380,000,000원)

바) 사해행위의 성립

(1)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C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구체적 상속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사실상 포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들의 소유로 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 재산이 감소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고를 비롯한 C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 재산이 감소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들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가) C의 행위가 상속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들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C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상속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일단 상속인의 지위가 발생한 이후에 구체적인 상속재산에 관하여 이루어지는 재산적 법률행위이므로,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상속포기와 다르고, 피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의 성질을 가지는 상속포기와는 달리 주로 재산적 고려에 의해서만 행하여지는 것이므로(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참조), 상속포기와 동일하게 볼 수 없는 점, 이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사망한 시기는 2019. 5. 4.인 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루어진 시기는 상속포기 기간인 위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9. 11. 18.인 점,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2019년 5월 4.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인 점, ③ 상속재산분할협의를(갑 제3호증)에도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위 제1의 나. 2)항 기재와 같이 협의분할한다'는 취지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의하여 C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법정상속분을 상속받지 않는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민법이 상속재산협의분할과 따로 규정하고 있는 상속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들의 선의 여부

피고들은 C이 금융기관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 받아 체납세금을 납부하고 C 소유의 주택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그 매각대금이 체납세금 납부에 충당되는 등으로 C에게 체납된 조세채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점에 관하여 선의였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을 제2, 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 소유의 서울 강남구 E 아파트 F호 아파트에

관하여 공매절차가 이루어졌고, 위 공매절차에서 2017. 8. 25. 위 아파트의 매각대금 1,521,000,000원 중 301,859,761원이 AJ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고 나머지 금액이 체납처분비와 역삼세무서가 관리하는 국세 채무의 변제에 충당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위 공매절차 당시 C의 채무액은 47억 원을 초과하였던 점,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C은 2019. 1. 말경 피고들에게 자신의 경제사정이 극도로 좋지 않아 더 이상 대출금 이자를 지급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후 실제로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들로서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이 경제사정이 상당히 나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앞서 본 사실이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가 C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함을 피고들이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관련 법리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가액배상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등 참조).

2) 원상회복의 방법으로서 가액배상의 가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의 취소에 따라 피고들이 부담하게 되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은 당초 C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C의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보다 3억 8,000만 원이 적다)까지 회복을 명하는 결과가 되어 공평에 반하므로, 이 사건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들의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함이 타당하다.

또한 사해행위인 계약 전부의 취소와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는 일부취소를 하여야 할 경우 그 일부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바로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취소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의 반환을 구하고 있지만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이 없더라도 피고들에게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다.

3) 가액배상의 범위 가) C이 처분한 공동담보 가액의 확정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취소 범위 및 피고들의 가액배상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는 먼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던 금액을 특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제2 목록 제4 내지 6항 부동산, 별지 제1 목록 제1 내지 7항 부동산은 2015. 8. 20.자 망인의 AE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위한 담보로 제공되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그 피담보채무액은 7억 원인 사실, 같은 부동산들이 2017. 7. 26. 피고 A의 AE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되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그 피담보채무액은 3억 5,000만 원인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제1 목록 제8, 9항 기재 각 부동산이 2013. 11. 13.자 망인의 AE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되었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그 피담보채무액이 0원인 점은 제1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2019. 5. 4. 기준으로 제1의 다.항 기재 표의 가액 란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위치와 지목, 사용현황, 공시지가의 변동내역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위와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이러한 사실들을 기초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의 일반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되어 있던 금액을 산정하면 합계 3,814,497,220원(= 4,864,497,220원 - 1,050,000,000원)이다.

이에 따라 C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분을 전부 포기함으로써 처분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 금액을 산정하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18,165,740원이다.

○ 간주상속재산 중 공동담보 금액: 4,194,497,220원(= 망인의 상속재산 중 책임재산 합계

3,814,497,220원 + C의 특별수익 380,000,000원)

○ C의 법정상속분 중 공동담보 금액: 1,398,165,740원(= 위 4,194,497,220원 × 법정상속분 1/3)

○ C의 구체적 상속분 중 공동담보 금액: 1,018,165,740원(= 위 1,398,165,740원 - 위 특별수익 380,000,000원)

나) 나머지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취득한 공동담보 가액

(1) 제1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AE조합에 대한 2건의 대출금 채무를 위하여 공동담보로 제공된 각 부동산 가액의 합계는 3,818,532,000원(= 296,946,000원 + 633,080,000원 + 259,168,000원 + 85,492,000원 + 261,800,000원 + 203,278,000원 + 206,896,000원 + 282,900,000원 + 1,479,184,000원 + 109,788,000원)이다. 따라서 위 각 대출금 채무를 위하여 공동담보로 제공된 각 부동산 별로 C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하여 공동담보에 제공된 금액은 당해 부동산의 가액에서 담보로 제공된 부분 상당액(= 1,050,000,000원 × 해당 부동산 가액/전체 부동산 가액인 3,818,532,00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2) 피고 A이 취득한 공동담보 가액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피고 A이 취득한 상속재산인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일반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된 부분의 가액을 산정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90,337,583원이다.

충주시 N 토지(별지 제1 목록 제1항)	85,492,000	61,983,857=(85,492,000 - 23,508,1432) 23,508,143원 = 1,050,000,000원 × 85,492,000원/ 3,818,532,000원(원 미만 버림))
충주시 O 토지(별지 제1 목록 제2항)	261,800,000	189,811,603=(261,800,000 - 71,988,3973) 71,988,397원 = 1,050,000,000원 × 261,800,000원/ 3,818,532,000원(원 미만 버림))
충주시 P 토지(별지 제1 목록 제3항)	203,278,000	147,381,677=(203,278,000 - 55,896,3234) 55,896,323원 = 1,050,000,000원 × 203,278,000원/ 3,818,532,000원(원 미만 버림))
충주시 Q 토지(별지 제1 목록 제4항)	206,896,000	150,004,818=(206,896,000 - 56,891,1825) 56,891,182원 = 1,050,000,000원 × 206,896,000원/ 3,818,532,000원(원 미만 버림))
충주시 R 토지(별지 제1 목록 제5항)	282,900,000	205,109,635=(282,900,000 - 77,790,3656) 77,790,365원 = 1,050,000,000원 × 282,900,000원/ 3,818,532,000원(원 미만 버림))
충주시 S 토지(별지 제1 목록 제6항)	1,479,184,000	1,072,445,704=(1,479,184,000 - 406,738,2967) 406,738,296원 = 1,050,000,000원 × 1,479,184,000원/ 3,818,532,000원(원 미만 버림))

충주시 N 토지(별지 제1 목록 제1항)	85,492,000	$61,983,857 = (85,492,000 - 23,508,1432) \times 23,508,143원 = 1,050,000,000원 \times 85,492,000원 / 3,818,532,000원 (원 미만 버림)$
충주시 T 토지(별지 제1 목록 제7항)	109,788,000	$79,599,069 = (109,788,000 - 30,188,9318) \times 30,188,931원 = 1,050,000,000원 \times 109,788,000원 / 3,818,532,000원 (원 미만 버림)$
충주시 U 토지(별지 제1 목록 제8항)	142,128,000	142,128,000
충주시 U, N 지상 건물(별지 제1 목록 제9항)	29,872,440	29,872,440
충주시 H 지상 V동호, W동호(별지 제1 목록 제10, 11항)	12,000,780	12,000,780
합계		2,090,337,583

(3) 피고 B가 취득한 공동담보 가액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피고 B가 취득한 상속재산인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일반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된 부분의 가액을 산정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24,159,641원이다.

충주시 H 토지(별지 제2 목록 제1항)	106,032,000	106,032,000
충주시 I 토지(별지 제2 목록 제2항)	49,468,000	49,468,000
충주시 J 토지(별지 제2 목록 제3항)	706,464,000	706,464,000
충주시 K 토지(별지 제2 목록 제4항)	296,946,000	$215,293,339 = (296,946,000 - 81,652,6619) \times 81,652,661원 = 1,050,000,000원 \times 296,946,000원 / 3,818,532,000원 (원 미만 버림)$
충주시 L 토지(별지 제2 목록 제5항)	633,080,000	$458,998,966 = (633,080,000 - 174,081,03410) \times 174,081,034원 = 1,050,000,000원 \times 633,080,000원 / 3,818,532,000원 (원 미만 버림)$
충주시 M 토지(별지 제2 목록 제6항)	259,168,000	$187,903,336 = (259,168,000 - 71,264,66411) \times 71,264,664원 = 1,050,000,000원 \times 259,168,000원 / 3,818,532,000원 (원 미만 버림)$
합계		1,724,159,641

다) 피고들의 구체적 상속분 중 공동담보 가액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없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졌을 경우 피고들이 취득하였을 구체적 상속분 중 공동담보 가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 피고 A: 1,398,165,740원(= 위 4,194,497,220원 × 법정상속분 1/3)

○ 피고 B: 1,398,165,740원(= 위 4,194,497,220원 × 법정상속분 1/3)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 가운데 피고 A은 692,171,843원(= 2,090,337,583원 - 1,398,165,740원), 피고 B는 325,993,901원(= 1,724,159,641원 - 1,398,165,740원)을 각각 초과취득하였다.

라) 가액배상의무의 주체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을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 가운데 일부를 각 초과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됨에 따라 가액배상의무를 부담한다.

마)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의 확정

사해행위 취소와 그에 따른 가액배상은 원고의 피보전채권과 사해행위로 상실한 책임재산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 가액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의 액수가 2021. 12. 14. 당시 1,277,773,82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위 채권의 액수가 달라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액수를 1,277,773,820원으로 인정한다. 반면에 C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을 통하여 상실한 책임재산의 공동담보의 가액이 1,018,165,74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사해행위 취소와 그에 따른 가액배상은 사해행위로 상실한 위 공동담보 가액인 1,018,165,740원 범위 내에서 취소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수익자는 사해행위로 인하여 자신이 취득한 이익 범위 내에서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므로, 피고 A은 초과취득한 공동담보 가액인 위 692,171,843원 범위 내에서, 피고 B는 초과취득한 공동담보 가액인 위 325,993,901원의 범위 내에서 각 가액배상의무를 부담하되, 위 두 사람은 각 초과취득금액에 비례하여 가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 A이 배상하여야 할 가액의 범위는 692,171,840원으로 산정된다[= 1,018,165,740원

× 692,171,843원 / (692,171,843원 + 325,993,901원)12) 원 미만 버림]. 또한 피고 B가 배상하여야 할 가액의 범위는 325,993,899원으로 산정된다[= 1,018,165,740원 × 325,993,901원 / (692,171,843원 + 325,993,901원), 원 미만 버림].

라. 소결론

1) 따라서 피고 A과 C 사이에 2019. 11. 18.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체결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같은 날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체결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위 각 가액상환금액의 합계인 1,018,165,739원(= 692,171,840원 + 325,993,899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2)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의 상대방은 채권자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A은 692,171,840원, 피고 B는 325,993,89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재판장판사김유진

판사송석봉

판사김형식

별지

1)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현대화확장사업이 확정되어 있던 AD 정수장으로부터 가까이 위치하여 개발행위가 극도로 제한되고 있으므로 당심 감정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 당시

감정가의 산출요인 중 개별요인의 행정조건과 기타조건에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감정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가가 전반적으로 높은 금액으로 평가되었고, 또한 충주시 J토지의 경우 당심 감정인은 감정 당시 인근의 평가선례 대상 토지와 거래사례 대상 토지를 잘못 선정함으로써 감정가의 산출요인 중 그 밖의 요인에서 표준지 공시지가 대비 6.53의 높은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위 토지의 감정가가 6억 원 이상 높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70420, 70437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심 감정인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시가 감정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당심 감정인의 감정평가액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으로 인정한다.

- 2) 23,508,143원 = 1,050,000,000원 × 85,492,000원 / 3,818,532,000원(원 미만 버림)
- 3) 71,988,397원 = 1,050,000,000원 × 261,800,000원 / 3,818,532,000원(원 미만 버림)
- 4) 55,896,323원 = 1,050,000,000원 × 203,278,000원 / 3,818,532,000원(원 미만 버림)
- 5) 56,891,182원 = 1,050,000,000원 × 206,896,000원 / 3,818,532,000원(원 미만 버림)
- 6) 77,790,365원 = 1,050,000,000원 × 282,900,000원 / 3,818,532,000원(원 미만 버림)
- 7) 406,738,296원 = 1,050,000,000원 × 1,479,184,000원 / 3,818,532,000원(원 미만 버림)
- 8) 30,188,931원 = 1,050,000,000원 × 109,788,000원 / 3,818,532,000원(원 미만 버림)
- 9) 81,652,661원 = 1,050,000,000원 × 296,946,000원 / 3,818,532,000원(원 미만 버림)
- 10) 174,081,034원 = 1,050,000,000원 × 633,080,000원 / 3,818,532,000원(원 미만 버림)
- 11) 71,264,664원 = 1,050,000,000원 × 259,168,000원 / 3,818,532,000원(원 미만 버림)
- 12) 1,018,165,744원 = (692,171,843원 + 325,993,901원)